

### ‘식물인간’도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?

A씨가 ‘식물인간 상태’에 빠지자 A씨의 부인인 B씨는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가집니다. 이 경우, A씨는 이혼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?

A씨는 ‘식물인간 상태’가 되었습니다. A씨의 부인인 B씨는 A씨가 식물인간이 되자 친정으로 돌아간 뒤, A가 아닌 다른 남성과 내연관계를 가집니다.

하지만, A씨는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,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습니다.

이에 A씨의 어머니인 D씨는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A씨를 대리해서 부인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“식물인간 같은 의사무능력자의 경우 피성년후견인(구 금치산자)의 경우, 피성년후견인의 요양과 그의 재산관리를 기본적 임무로 하는 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그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, 그 후견인이 배우자인 때에는 수소(受訴)

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.” 라고 판시하였다.

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된 A씨의 어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A씨를 대신해서 그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.

그러나, 모든 경우에 이러한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.

- ① 배우자에게 ‘악의적인 유기’ 또는 ‘부정행위’와 같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,
- ② 피성년후견인의 객관적인 이혼의사를 주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.
- ③ 여기서, 피성년후견인(식물인간 A)의 이혼의사는 평소 피성년후견인의 결혼관 및 자녀들의 의견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고려되어야 합니다.

(출처/명쾌한 판사와 함께하는 법원이야기)